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09호 2022. 11. 02.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34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3-F1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220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2-122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
- 정선군 공고 제2022-1224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31
- 정선군 공고 제2022-1226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43
- 정선군 공고 제2022-122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2

○ 정선군 공고 제2022-122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2
○ 정선군 공고 제2022-1229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 정안.....	69
○ 정선군 공고 제2022-1230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76
○ 정선군 공고 제2022-1232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78
○ 정선군 공고 제2022-1236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1
○ 정선군 공고 제2022-1237호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87
○ 정선군 공고 제2022-1241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3
○ 정선군 공고 제2022-1243호 공시송달 공고.....	98
○ 정선군 공고 제2022-1248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34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3-F1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12-263호(2012. 8. 17.)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3-F1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읍 남면 낙동리 2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3-F1호) 개설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도로	중3-F1호	L=619m, B=12m	L=63m, B=1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정선군수(문화관광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3. 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면 낙동리	28-8	구	510	8.6	-	국(환경부)			
2	남면 낙동리	28-5	구	91	17.6	-	국(환경부)			
3	남면 낙동리	28-1	구	62,199	549.3	-	국(환경부)			
계				62,800	575.5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220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고령화 가속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필요성 대두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통한 질병예방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 확대
-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을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

3. 예고기간 : 2022. 10. 24. ~ 2022. 11. 3.(10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 ▷ 전 화 : 033 - 560 - 2975
- ▷ F A X : 033 - 560 - 2588
- ▷ E-mail : guess791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75세”를 “7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분기”를 “매 반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날”을 “반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

< 앞 면 >

< 뒷 면 >

20 년 도 반 기 NO.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
실버에티켓

금액



정선군

금액

- 목욕,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정선군 관내 목욕, 이·미용서비스 제공업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날짜 : 20 . . . / 유효기간 : 20 . . . 까지

배 부 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준						
1.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2. 목욕, 이·미용권은 정선군 관내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목욕,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처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대금 지급 청구서

업 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구분	☐ 목욕 ☐ 이용 ☐ 미용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이용매수	총 매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읍 · 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료로 받은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발급대장**
(반기)

결 재	주무관	팀장	과장

일자	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제작매수										
배부매수										
반납매수										
비고										

[별지 제6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지급대장

(20 년 반기)

[illegible]

정선군 공고 제2022-122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민선8기 공약(정책)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
- 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간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지향

2. 주요내용

가. 과 분과

- 1)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관광과
- 2) 농업축산과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나. 기획관 소관 사무의 조정(안 제4조)

○ 소관 사무의 조정(제2항)

-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의 조정(안 제5조)

○ 소관 부서의 조정(제1항)

(현행)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변경)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안전과

- 가족행복과 : 여성청소년과에서 명칭 변경
- 경제과 : 시설국으로 이관
- 전략산업과 : 시설국으로 이관

○ 소관 사무의 조정(제2항)

-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11호)
-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제12호)

-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제13호)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제14호)
-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5호)
-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제16호)
-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제17호)
-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제18호)
-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제19호)
- 안정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제20호)
- 그 밖의 환경·문화체육·안전행정에 관한 사항(제21호)

라. 시설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의 조정(안 제6조)

○ 소관 부서의 조정(제1항)

(현행)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변경) 관광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유통축산과

· 환경과 : 행정국으로 이관

· 안전과 : 행정국으로 이관

○ 소관 사무의 조정(제2항)

-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제5호)
-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7호)
-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제8호)
-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9호)
-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제10호)
-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제20호)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제21호)
- 농지관리(제22호)
-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제23호)
-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제24호)
-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제25호)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제26호)
-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제27호)
- 양곡관리(제28호)
-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제29호)
-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0호)
-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제31호)
-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제32호)
-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제33호)

- 그 밖에 지역산업, 농업정책, 유통축산 행정에 관한 사항(제34호)
- 마.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기능 분리(안 제6조, 안 제7조)
 - 농업축산과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시설국으로 이관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 소관사무의 조정(제15조 제2항)
 -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제1호)
 -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제2호)
 -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제3호)
 -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제4호)
 -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제5호)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제6호)
 -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제7호)
 -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제8호)
 -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제9호)
 -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제10호)
 -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제11호)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제12호)
 -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제13호)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제14호)
- 바. 사업소 신설(안 제13조, 제15조)
 - 사업소 신설 : 교통관리사업소(제13조 제1항)
 - 소관사무의 조정(제15조 제2항)
 -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제1항)
 - 공영버스 운행 관리(제2호)
 - 그 밖에 교통운수에 관한 행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제3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안전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아동·보육·청소년·노인·여성가족·의료구호·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8.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0.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회계·세무·민원·여성청소년·복지·환경·문화체육·안전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 ① 시설국에 관광과, 전략산업과, 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를 둔다.

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5.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소관분야 인허가 접수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0.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2. 농지관리
23.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24.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25.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2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7.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28. 양곡관리
29.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30.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31.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32.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
33.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
20. 그 밖의 관광·지역산업·경제·산림·건설·도시행정·농업정책·유통축산 행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를 둔다.

③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소장 등)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2.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

4.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
5.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
6.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
7.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9.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
11.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
1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13.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과 지소장,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장과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는 제1항의 소관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군에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이고, 교통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정선읍 정선로 1226에 둔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
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
5. 수질검사 및 관리
6. 지하수 관리
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②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 공영버스 운행 관리
3. 그 밖에 교통운수에 관한 행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장 읍·면

제16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읍장·면장)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직무) 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2. 민원서류 발급
3. 리·반 조직운영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제6장 읍·면 출장소

제19조(설치) ① 읍·면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 업무
2.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3. 인감, FAX민원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의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제1항 중 부서의 명칭과 직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행정국에는 8개 과를 두고, 직제는 회계과(주무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안전과 순으로 한다.

2. 시설국에는 9개 과를 두고, 직제는 관광과(주무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한다.

제4조(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1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정선군보건소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 일원
고한사복지소	고한읍 물한리길 10	고한읍, 사북읍 일원
신동읍지소	신동읍 의림로 313	신동읍 일원
화암면지소	화암면 그림바위길 57	화암면 일원
남면지소	남면 별어곡1길 59	남면 일원
여량면지소	여량면 서동로 2885	여량면 일원
북평면지소	북평면 북평6길 34	북평면 일원
임계면지소	임계면 송계8길 9	임계면 일원
용탄보건진료소	정선읍 가리왕산로 290	정선읍 용탄1~3리, 회동1~2리
광하보건진료소	정선읍 망하길 87	정선읍 광하1~2리, 굴암리, 가수리
조동보건진료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1~9리, 방제1~2리
고성보건진료소	신동읍 창말길 26	신동읍 고성1~2리, 덕천리, 운치1~3리
호촌보건진료소	화암면 풍촌1길 12-6	화암면 물운1~2리, 호촌리, 건천리
증산보건진료소	남면 도원2길 27	남면 무릉1~5리
광락보건진료소	남면 광락로 46	남면 낙동1~3리, 광덕1~2리
구절보건진료소	여량면 구절양지말길 28	여량면 유천1.3리, 구절1~3리
도전보건진료소	임계면 눈꽃마을길 184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반천보건진료소	임계면 반천고양로 796	임계면 반천1~2리, 고양리, 여량면 봉정리
문래보건진료소	임계면 백두대간로 312	임계면 문래1~3리, 덕암리, 용산2리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0조제2항 관련)

출 장 소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신동읍 함백출장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리, 방제리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

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 ⑤ <생략>
- ⑥ 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

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 농어촌의료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24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민선8기 공약(정책)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
- 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간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지향

2. 주요내용

가. 과 분과 및 소관국 지정, 본청 내 과 조정

1)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관광과

· 문화체육과 : 행정국

· 관광과 : 시설국

2) 농업축산과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 농업정책과·유통정책과 : 시설국

3) 과 조정

· 경제과, 전략산업과 : 시설국 이관

· 환경과, 안전과 : 행정국 이관

나.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읍면장의 직급 조정

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읍면장의 사무의 조정(별표 1 ~ 별표 5)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직속기관은 소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시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사무분장)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술지원과장과 기술연구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9조(직급) ① 정선군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제11조(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교통관리사업소

제13조(직급) 교통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과 같다.

제6장 읍·면

제15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

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화암면장 · 임계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3. 남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4. 정선읍장 :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제16조(분장사무) 읍 · 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7장 읍 · 면 출장소

제17조(직급) 신동읍 함백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 지방농업주사로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국장 · 담당관 · 과장,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국장 · 담당관 · 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국장 · 담당관 · 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 · 폐합 · 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

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 ⑤ <생략>
- ⑥ 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

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 농어촌의료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26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민선8기 공약(정책)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
- 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간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지향

2. 주요내용

- 가.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렬직급 조정(별표)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정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렬·직급(제4조제2항 관련)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본 청》	기획관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균형발전담당	지방행정주사	
		인구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공보담당	지방행정주사	
		감사법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총무행정관	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비서담당	지방행정주사
			데이터통계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전산주사
		전산정보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전산주사	
		통신관리담당	지방방송통신주사 · 지방전산주사	
	행 정 국	회계과	경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계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세무과	세정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부과담당	지방세무주사
			과표담당	지방세무주사
			징수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세외수입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민원과			민원처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적관리담당	지방시설주사
		지적제조사담당	지방시설주사	
		토지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공간정보담당	지방시설주사	
		가족행복과	가족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시 설 국	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청소년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평생교육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경로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장애인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환경보전담당	지방환경주사
		자원순환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환경정화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 지방보건주사
		수질총량담당	지방환경주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지방행정주사
		아리랑담당	지방행정주사
		생활체육담당	지방행정주사
	안전과	안전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중대재해대응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군관협력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과	관광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마케팅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관광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경제과	경제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소상공인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일자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사회적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공업주사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그린뉴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공업주사
		지역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산림과 산림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녹지주사
		산림조성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경영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녹지주사
		정원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녹지주사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토목담당	지방시설주사
		하천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재해예방담당	지방시설주사
		생활도로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과 도시재생담당	지방행정주사
		도시계획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건축담당	지방시설주사
		주택담당	지방시설주사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농촌활력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농촌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농산지원담당	지방농업주사
		원예특작담당	지방농업주사
		유통축산과 농업마케팅담당	지방농업주사
		농식품유통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농촌지도사
		축산경영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농촌지도사
		가축방역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수의주사
		지도기획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농촌지도사
		사회지도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농업기계담당	지방공업주사 · 지방농촌지도사

보 건 소	기술연구과	작물지도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병리환경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과학영농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연구개발담당	지방농촌지도사 · 지방농업연구사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보건주사
		공공의료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보건주사
		예방의약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감염병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위생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식품위생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진료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고한사북보건지소 (보건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건강증진과	건강생활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사업소》		마음돌봄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방문보건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치매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수도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 지방공업주사
		하수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 지방공업주사
		시설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 지방공업주사
	교통관리사업소	교통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교통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공영버스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읍 면》	정 선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복지주사
	고 한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사 북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전산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신 동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화 암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남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여 량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북 평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임 계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녹지주사
《출장소》	함백출장소	출장소장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 지방농업주사

정선군 공고 제2022-122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민선8기 공약(정책)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 조정

2. 주요내용

- 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5% 이내	24% 이내	30% 이내	25% 이내	14% 이상	1%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5% 이내	85%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5	655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9	629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593	593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과에 대한 분과와 사업소 신설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비용 없음.

4. 작성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2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민선8기 공약(정책)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 조정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29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민선8기 공약(정책) 달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선군의 행정역량을 강화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 조정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규정) 조정
 -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20일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훈령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30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정 선 군 수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선명 : 군도 7호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2-2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48-3 까지(2차로 1.73km)
3. 주요통과지 : -
4. 사용개시일 : 2022년 10월 29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2022. 10. 28 ~ 11. 20. / 정선군 건설과

군도7호선 사용개시 공고 노선도



정선군 공고 제2022-1232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정 선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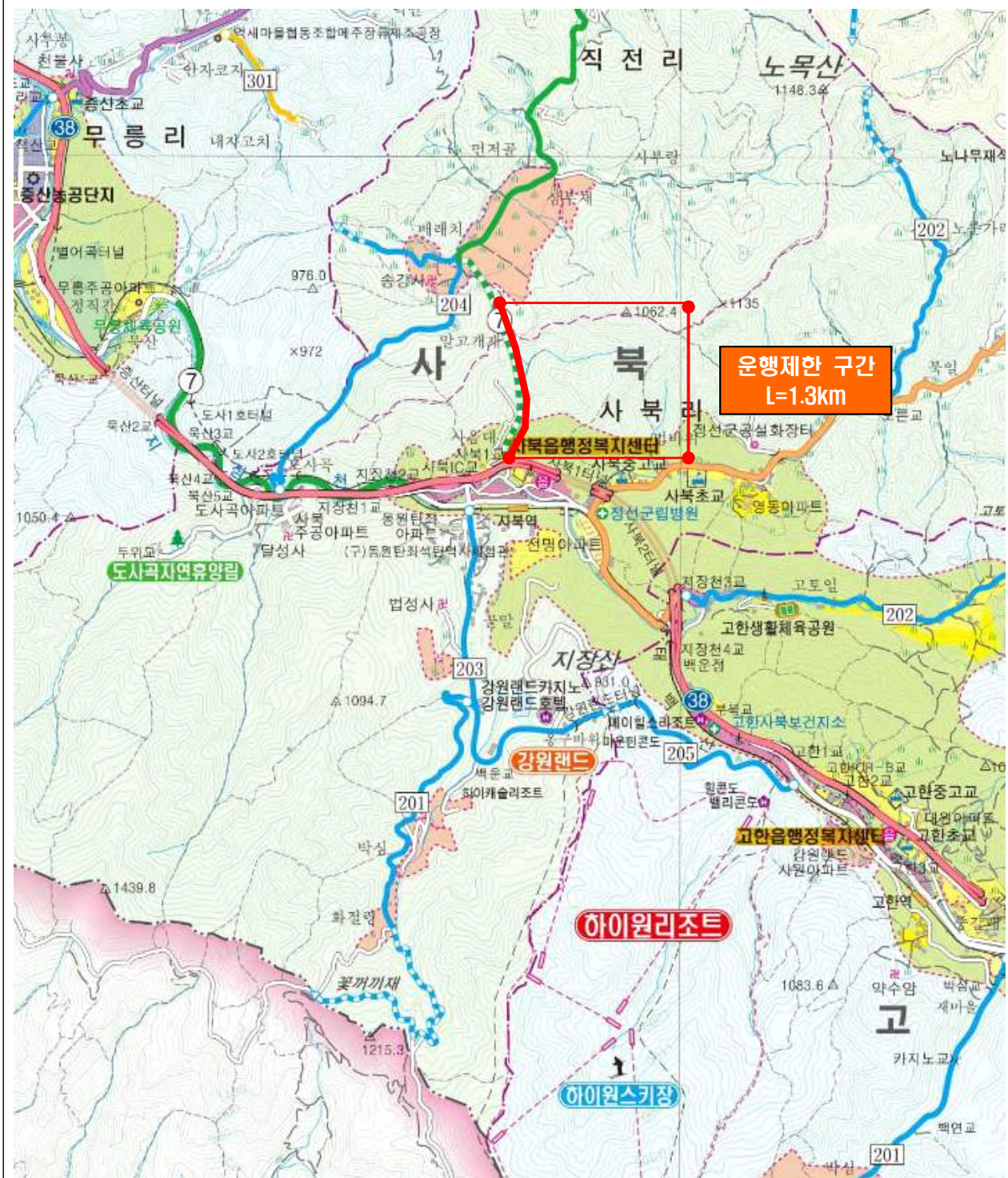
도로의 종류	군 도	노선명	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적재 중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도로 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①,②항)	구간	L=1.3km (사북읍 직전리 517-6 ~ 사북리 342-2) ※ 붙임도면 참조
기간	2022. 10. 29일부터 ~ 제한사유 해소시 까지		
이유			
- 군도 신규개설 후 우회도로 미개설에 따른 중차량(화물자동차 등) 통행으로 시가지 혼잡 발생, 도로시설물 훼손예방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제한 구간 설정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 기존도로[구 군도] 이용 (직전리 584-3 ~ 사북리 439-11) - 예외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도로시설 정비 및 관리용 자동차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차량의 운행 제한 위치도

1. 도로의 종류 : 군도 7호선
2. 제한구간 : 사북읍 직전리 517-6 ~ 사북리 342-2 [L=1.3km]
3. 대 상 : 적재 중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특수자동차
4. 기 간 : 공고일부터 ~ 제한사유 해소시 까지
5. 사 유 : 군도 신규개설 후 우회도로 미개설에 따른 중차량(화물자동차 등) 통행으
로 시가지 혼잡발생, 도로시설물 훼손예방 및 지역주민 안전확보 필요



차량의 운행 제한 지형도



정선군 공고 제2022-1236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23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개정을 통해 실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
 - 보조할 수 있다 → 지원하여야 한다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10. 25. ~ 2022. 11. 04.(1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50),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비 보조)” 를 “(운영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조 및 제3항” 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으로, “경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운영비” 를 “운영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u>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조 및 제3항</u>에 따라 정선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u>경비·운영비</u>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정선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u>경비·운영비</u>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① ---- <u>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u>----- ----- <u>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u>운영비</u> ----- -----.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37호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23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개정을 통해 실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개정
- 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 15인 이내 → 7명 이상 15명 이하
- 다. 일본어 투 표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10. 25. ~ 2022. 11. 04.(1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50),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체육진흥협의회”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5인 이내로”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스포츠지원담당주사가”를 “스포츠지원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u>체육진흥협의회</u>(이하 “<u>협회</u>”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u>협의회</u>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3. (생략) 제3조(구성) ①<u>협회</u>는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u>15인 이내</u>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u>군수</u>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④ (생략) 제7조(간사등) ① (생략) ②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u>스포츠지원담당주사</u>가 된다. ③·④ (생략)	<u>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제5조제2항에 따라</u> ----- ----- <u>체육진흥협의회</u> ----- ----- ----- <u>규정하는 것</u> ----- -----. 제2조(기능) <u>체육진흥협의회</u>(이하 “<u>협회</u>”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 <u>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u>-----. ②---- <u>정선군수</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스포츠지원팀장</u>이 -----. ③·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41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노후화된 군 임대아파트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 편의를 증대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안 제4조)

- 군 임대아파트 관리를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도시과)
- 전 화: 033-560-2472
- 팩 스: 033-560-2596
- 이 메 일: iehe9697@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표제를 “아파트 관리”에서 “아파트 관리 및 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를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7. 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아파트 관리) ①아파트 관리하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다.	제4조(<u>아파트 관리 및 위탁</u>) ①----- ----- -----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지장수목 식재)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25. ~ 2022. 11. 15. (21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746	미상	미상	지장수목 식재	615	

5. 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11.15.(화)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우리군에서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7. 문 의 처

- 강원도 정선군청 시설국 건설과 하천관리팀
- 전화번호 : 033-560-249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내 용	불법 지장물(수목) 식재
	

내 용	불법 지장물(수목) 식재
	

정선군 공고 제2022-1248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케이블카 이용객이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료 상품권 환급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8조)
 - 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신설)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10. 27. ~ 2022. 11. 16.(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054),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이용료)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이용료)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